

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2. 3.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비용의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5조~제6조)
- 라. 사후관리,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기타사항(보고, 준용규정, 시행규칙 등) (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 마. 심사예고 : 생략
- 라. 기타
 - 1) 비용추계서 : 불 입
 - 2) 관계법령 발췌문 : 불 입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란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말한다.
2. “버스 이용료”란 임실군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우대승차권”이란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버스 이용에 필요한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승차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탑승자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에는 버스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75세 이상 어르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군정 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 ① 버스 이용료는 군수가 우대 승차권을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매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대 승차권 요금은 버스 기본요금을 고려하여 1매당 1,200원을 지원한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버스 운행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우대 승차권을 근거로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우대승차권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중교통약자의 우대승차권 탑승 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버스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① 버스 이용 우대자는 우대 승차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및 버스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비용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고 등) 읍·면장은 우대 승차권 배부 결과 및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75세이상 어르신 및 3급이상 장애인 버스 이용 우대승차권 발행
(2015년 1월 기준 2,017명)
- 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 2015년도 290,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107명(2015. 1월 기준) × 1,200원×10월×12매 =290,000천원

3. 재원조달 방안

- 2015년 본예산 100,000천원 편성
- 잔여액 190,000천원 추경예산에 반영

4. 작성자

의회사무과장 정 회 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재원 조달		29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의존 재원	소 계	29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균 비	29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